외부감사계약서

(일반법인용)

감 사 인(을) 안건회계법인

위의 갑·을 양자는 공인회계사법 제21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인하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에 의한 회계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감사목적) ①이 계약에 의하여 을이 행하는 감사는 외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목적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을이 행하는 감사는 갑의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연결재무제표준칙 및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준칙을 포함한다)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되어 있는가의 여부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데 있으며, 제반법규의 불이행·허위 또는 부정사항의 방지 및 발견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③재무제표 작성과 적절한 공시·희계자료 유지·내부통제·회계정책의 선정과 적용· 회사자산의 보호에 대한 책임은 갑에게 있고, 을은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형성하고 표명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2조(감사기준) ①을이 실시할 감사의 기준은 외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기준 및 동 기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준칙(이하 "감사기준"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을은 갑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포함되지 아니하였다는 합리적인 확신을 얻도록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계획하여 실시한다. 을의 감사는 재무제표에 표시된 수치와 공시자료의 작성근거를 시사의 방법에 의하여 검증하는 것을 포함하며 전반적 인 재무제표 표시뿐 아니라 경영진에 의하여 채택된 회계원칙과 경영진에 의한 추정을 평가하는 것을 포함하고,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재무정보의 왜곡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감사기준에 의한 감사결과는 시사의 성격, 회계제도와 내부통제제도 및 감사의 고유 한계로 인하여 중요한 왜곡표시가 발견되지 않고 계속 상존할 수 있는 불가피한 위험 을 내포하고 있다.

제3조(감사대상) ①감사대상이 되는 갑의 재무제표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개별재무제표
제_ <u>/</u> 기 <u>200</u>
2. 연결재무제표
제기년월일부터년월일까지
3. 결합재무제표 제기년월일부터년월일까지
②이 계약체결당시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감사대상사업
연도말 현재 연결대상종속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외감법시행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
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생각 학을 체결한 것으로 하며, 감사대상
사업연도말 현재 연결대상종속회사가 없는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아니한다.
아니만나.
제4조(감사실시기간) 올이 실시할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예정기간은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감사장소) 갑은 감사의 실시기간중 을의 업무수행에 적합한 장소 및 시설을 제공 하여야 한다.
제6조(감사책임자) 을의 감사책임자는이며, 변동이 생기는 경우 올은 사전에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감사보고서의 제출) 올은 갑에게 감사보고서를 다음 각호와 같이 제출한다.
1. 개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부를 재무제표기준일후일까지
2.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부를 연결재무제표기준일후일까지
3. 결합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부를 결합재무제표기준일후일까지
제8조(감사보수)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갑의 제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수액은 일금원정(₩)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수액은 계약시 별지 제3호 서식 회계감사보수계산서로 산정·작성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수액은 감사대상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자산총액·사업장수·감사소요시간·연결 및 결합대상회사수의 증감 등 감사보수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조정계산하고 잔금지급시에 조정된 과부족금액을 가감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되는 감사보수액은 공급가액이며 부가가치세 는 별도로 한다.

⑤감사업무수행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실비변상적 비용은 별도로 청구 한다.

- 1. 실험비
- 2. 감정료
- 3. 측량비
- 4. 출장비
- 5. 인쇄비
- 6. 기타 전 각호와 유사한 비용





제9조(착수금등의 지급) ①갑은 을에게 이 계약과 동시에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 착수금으로 일금 <u>오백만</u> 원정(₩ ★. ००० ०००)을 <u>२००२</u>년 <u>5</u>월 <u>30</u>일까지 지급하고, 중도금으로 일금 <u>오백만</u> 원정(₩ ★. ००० ०००)을 반기검토보고서 제출일(반기검토가 없는 경우 중간감사 종료일)후 즉시 지급하며, 잔금은 감사보고서 제출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착수금·중도금·잔금 지급시 세법에서 정한 부가가치세를 가산 하여 지급한다.

제10조(감사자료의 제공등) ①갑은 재무제표감사의 대상이 되는 재무서류를 다음 각호 의 지정일까지 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개별재무제표감사 : 정기주주총회 6주일전
- 2. 연결재무제표감사 :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3월이내
- 3. 결합재무제표감사 :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4월이내

②갑은 을이 감사실시(반기검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필요한 회사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 및 회계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때에는 신속하게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에 필요한 회사의 업무와 재무상태를 조사할 때에는 성실하게 이 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갑은 을의 감사상 필요한 서면 또는 구두질문에 대하여 신속하게 답변하여야 하며, 을의 요청에 따라 감사종료(반기검토종료를 포함한다)시 경영자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감사인의 비밀보장) 을은 감사상 지득한 비밀을 타에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 하며, 보조자의 감사상 비밀누설행위에 대하여 감독책임을 진다.
- 제12조(해약) ①갑의 사정에 의하여 해약을 할 때에는 갑은 을에게 이미 지급한 해당사 업연도 보수액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외감법 제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갑의 사정에 의하여 기중감사 착수일이후에 해약할 때에는 당해사업연도 감사계약보수액의 2분의 1을, 결산감사 착수일이후에 해약할 때에는 당해사업연도 감사계약보수액의 전액을 갑은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을의 감사보고서 제출의무는 소멸한다.
 - ③을의 사정에 의하여 1개 사업연도 기간중에 해약을 할 때에는 을은 이미 영수한 해당사업연도 보수액의 2배를 갑에게 배상한다. 다만, 외감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해임사유의 발생으로 해약하는 경우에는 이미 영수한 해당 사업연도의 보수액을 반환한다.
 - ④갑 또는 을의 책임으로 할 수 없는 불가한 함께 로 인하여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계약은 종료하는 것으로 하고, 보수의 지급등에 관하여는 상호합의에 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 ⑤제3항 단서의 경우 연결 및 결합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계약은 자동해지된 것으로 하며, 을은 갑이 이미 지급한 해당사업연도 연결 및 결합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수액은 반환한다.
- 제13조(배상책임 및 면책) ①재무제표의 작성과 공시의 책임은 갑에게 있으므로, 갑이고의적으로 허위 기타 부정한 자료를 을에게 제공함으로써 을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갑은 그 손해에 대하여 을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 ②갑이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공 등을 지연함으로써 감사상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을은 책임지지 아니한다.
- 제14조(상호합의)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정하기로 하며, 이 계약조문의 해석은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해석에 따른다.
- 제15조(관할법원) 이 계약의 이행에 관하여 계약 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의 제기는 피청구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하는 것으로 한다.
- 제16조(기타사항) 이 계약의 성립을 입중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올이 각기 기명날인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제17조(특약사항) ①

년 월

감사의뢰인(갑)

사무소소재지: 京畿道 (平澤市 芝制洞 33 사 호: (14) (14) (15) (16) (17)

감 사 인(을)

사무소소재지: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252-5

감사 인명: 안건 회계법

대표이사(대표) 대표이사 공인회계사 이 원 후

[별지 제1호 서식]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

배회사명	:					
			 -			

	T					(2-	4 · 맥만원, %)
연번	종속회사명	직전사업 연도말의 자산총액	지분율			^{'3)} 연결	외감법시행령 제1조의3
			기 배회사	^{·2)} 종속회사	계	대상 구분	제1항의 해당호
			(4.2a)				
			(HL)	ŽINI.		3343	
			WE TE			20	
				(%) (
		-			to the same		

京畿道 平澤市 芝制洞 33

갑의 대표이사 : (株) 이 이 피 에(안)

代表理事 李 鎔領

₩ 작성요령 : 1) 지배회사의 종속회사 지분율

2) 지배회사의 종속회사가 다른 종속회사에 대하여 소유하고 있는 지분율

3) 연결대상구분(1. 국내종속회사, 2. 해외종속회사, 3. 연결제외)

[별지 제2호 서식]

결합대상 대규모기업집단 계열회사 현황

기업집단명	:

(단위: 백만원)

연번	계열회사명	직전사업년도말의 자산총액	기 결합대상구분	비고
		, , , , , , ,		4
			910)	
			京義道 平澤	r 学制调 3

(株)のの可到

갑의 대표이사 :

₩ 작성요령 : 1) 결합대상구분(1. 국내계열회사, 2. 해외계열회사, 3. 결합제외)

회계감사보수계산서

7 00

1. 개별재무재표 회계감사보수

	회 사 명	㈜아이	피에스	제	7 기
	감사 대상 년도	2002. 1. 1 -	2002. 12. 31		
	자 산 규 모	241.22 억원	사 업 장 수	0 개	
	상 장 여 부	등록법인	감사인변경유무	무	(금 액)
1	기 본 보 수				16,470,110
	120억원에 대한 보수	(당해자산)		16,470,110	
	300억원에 대한 보수	(직하급자산)	*	19,727,666	
2	보간법에 의한 추가5	브수			2,193,000
	(19,727,666) -	(16,470,110) ×			
			(241.22) 억	- (120) 억	
			(300) 억	- (120) 억	
3	당해자산에 대한 감시	·보수	(① + ②)		18,660,000
4	사업장 단위가산	0 개인 경우	0		-
5	상장법인 및 등록법인	· 가산	(③ + ④) × 14%		2,612,000
6	감사인 변경시 가산		(3 + 4 + 5) ×	10%	_
7	소 계		(3 + 4 + 5 + 6	6)	(21,270,000)
8	외국어 직무수행 또는	- 외국어보고서 작성 기	나 산	(① × 50%)	-
9	반기재무제표확인 및	의견표시 보수		(⑦ × 10%)	2,120,000
100	연결재무제표 회계감	사보수			
11)	출장비 및 인쇄비				-
12)	소 계		(8 + 9 + 10 + 6	D)	(2,120,000)
13	총 계		(⑦ + ⑫)		(23,390,000)
(14)	기 수 령 액	착 수 금			-
		중 도 금			-
(15)	차감 청구액				(23,390,000)
_					LAW BOOK STATE

(29000.00)